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의신청 신청·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622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2
-----------------	---

1. 이의신청 신청·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	2
-------------------------------------	---

※ 참고자료

1. 교육환경평가 관련 법령 규정	8
--------------------------	---

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이의신청 관련 하위법령 정비방안」 주요내용 ..	10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결과 또는 권고 내용에 대하여 해당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이의신청 신청·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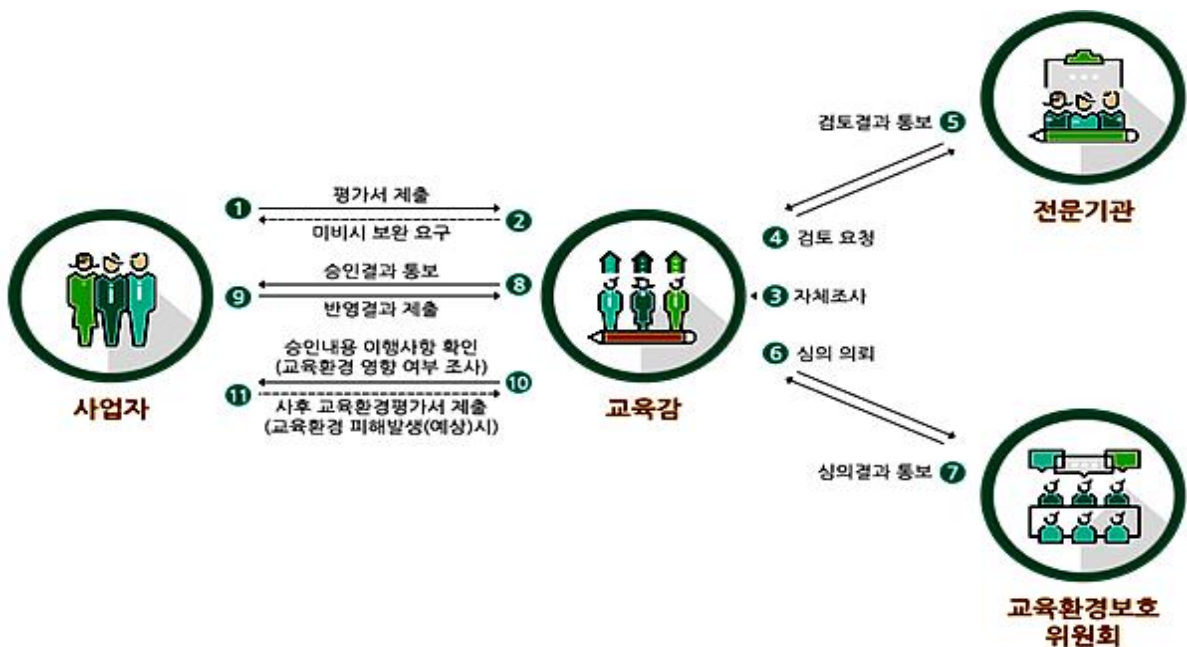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교육환경평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학교 예정지 및 기존 학교 주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해한 환경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임.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을 근거로 시행되며¹⁾, 학교 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 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교육환경평가 절차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1) 참고자료: 「교육환경평가 관련 법령 규정」 참조.

□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검토·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권고 포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교육환경법 시행령은 이의신청 기간을 승인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²⁾.

□ 그러나,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규정을 제시하는 「행정기본법」은 신청기간을 30일, 결과 통지기간을 14일(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³⁾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환경법 시행령이 별도의 위임 없이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이의신청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 >

구분	이의신청 신청기간	결과 통지기간
「행정기본법」	30일	14일 (10일 연장 가능)
교육환경법 시행령	45일	30일

2)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에 개정안은 그동안 교육환경법에 명문의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던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이는 법제처가 발표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이의신청 관련 하위법령 정비방안」('25.8.)에 따른 것으로,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하위법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에 반하므로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이의신청 자료 작성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업시행자 의견 등에 따라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4.7.) 이의신청 신청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한 바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충분한 검토 및 행정 절차 추진 등을 위해 통지기간에 대한 특례를 유지할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법률 차원에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일정한 상한·하한 범위를 두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이의신청 신청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것

4)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권리구제 측면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나,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보다 더 길게 설정하는 것은 이의신청 절차의 이용을 주저하게 만들어 권리구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함⁵⁾.

이의신청은 기본권 제한을 해제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 원칙⁶⁾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에 관한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일정 범위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하게, 「행정기본법」 또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은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하되, 그 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음⁷⁾.

□ 한편, 개정안의 제출 배경이 된 법제처의 검토 자료에서도, 이의신

5) 법제처, 「행정기본법상 국민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140p, 2024.11.

6)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유보 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 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에 대한 신청·처리기간을 법률 단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기본법」에 대한 특례는 법률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당 방식이 이의신청 신청·처리기간을 하위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알기 쉽다고 밝힌 바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184

8) 법제처, 「행정부제 혁신을 위한 이의신청 관련 하위법령 정비방안」 7p, 2025.8.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2 참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

야 한다.

-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 제1항제2호의 내용: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 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 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④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 가목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한다.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작성자에게 이를 보완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하여 작성·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그 사유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정비 기준 및 정비 방식

○ (정비 기준)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 ① 법체계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특례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법률로 상향

*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기간 계산 시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이유로 하위법령에 이의신청 근거규정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위법령 개정

[개별법 정비 기준]

구분	내용
유형 1	•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과 크게 차이가 없거나* 동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15일인 경우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위법령 관련 규정 삭제 또는 정비
유형 2	•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었으나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한 경우 → 특례사항을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

3. 이의신청 관련 법령 정비 유형

유형 2 「행정기본법」 특례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 하위법령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처리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신속한 이의신청 제기가 필요하거나 위

9) 자료: 법제처

원회 심의로 처리가 장기간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특례 유지가 필요한 경우

- (정비방안) 하위법령에 규정된 해당 내용을 법률 개정을 통해 상향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이의신청과 관련된 신청·처리기간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특례 규정임을 명확화
 - * 처리기간을 길게 설정한 경우는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면이 있으므로 개별법 존중 필요

4. 이의신청 관련 법령 세부 정비 방안

2.1안 특례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연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 하위법령에 규정된 이의신청과 관련된 신청·처리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법률개정 완료 후에는 법률로 상향된 내용을 해당 하위법령에서 삭제
 -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처리기간을 법률 단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특례는 법률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의신청 신청·처리기간을 하위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알기 쉬움

2.2 안 특례 사항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는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방안

- 하위법령상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신청·처리기간 등에 대해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신설
 - 하위법령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된 신청·처리기간 외에 이의신청 보완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하고 있어 법률상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법률개정 완료 후 별도의 하위법령 정비가 불필요하므로 입법경제적